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05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임광현·정일영·황정아

정태호 · 김정호 · 강득구

최기상 • 이기헌 • 조승래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 제공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여행지원 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숙박·교통 비용에 대한 국내여행지원 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4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9조의14(근로자가 지급받은 국내여행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자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여행지원금(숙박·교통 비용 지원금만 해당하고, 이하 이 조에서 "국내여행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이 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가 지급받은 국내여행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9조의14(근로자가 지급받은
	국내여행지원금에 대한 과세특
	례)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
	<u>자가 사용자로부터 2025년 12</u>
	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국내여행지원금
	<u>(숙박·교통 비용 지원금만 해</u>
	당하고, 이하 이 조에서 "국내
	여행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해
	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
	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이 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여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
	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
	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
	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u>야 한다.</u>